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2월 16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의무 및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(안 제9조 신설)
- 2)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(안 제11조 신설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#### 2) 주요 내용

가)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(안 제9조 신설)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.

나)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(안 제11조 신설)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

#### 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분보장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